

**2026년 첨단의료복합단지 메디코어 지원사업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첨단의료복합단지 메디코어 지원사업-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4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 2026년 첨단의료복합단지 메디코어 지원사업-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 (지원규모) 총 12.9백만원/기업당 6.45백만원 ※기업부담금 제외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11.30.(월)까지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8.4.(화)~8.12.(수) 18:00까지(9일간)
- (지원목적) 기업 수요 중심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고도화와 제품 상용화 추진
- (선정규모) 2개사 내외
- (제출양식) 붙임 양식 및 별첨 서류 참조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수요 중심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고도화와 제품 상용화를 촉진

□ **지원대상**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실입주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서비스 지원
-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제품 제작, 인허가, 특허, 마케팅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 2개社 내외 선정, 기업당 6.45백만원

- ※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선집행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 적정성 확인하여 **지원금 후지급**
- ※ 기업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과제 수 및 과제별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 재단이 지원하는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무조건** : 협약금액의 10%이상 기관 현금 부담 필수

- ※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의 사업비 조정 의견에 따라 사업비 규모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11.30.(월)까지(약 9월 초 협약 예정)

□ 평가기준

평 가 기 준		
사업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의 우수성	사업 성과의 적절성
- 사업의 명확성 - 사업 내용의 우수성 - 사업 내용의 실현가능성	- 기관의 연구개발/사업화 역량 - 기관 인프라 역량	- 사업화 성공가능성 - 사업 성과의 우수성 - 경제적, 공공적 파급효과

※ 평가 결과 보통(70점 이상) 이상인 경우 지원기업으로 선정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원금 조정

□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1. 기관장(기업의 대표이사 등) 직인날인된 제출공문	1부
2.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업 직인날인된 사업계획서(붙임)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기업현황카드(붙임)	1부
5.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확약서(붙임)	1부
6. 인감증명서	1부

제출서류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	원본 1부
8.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원본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10. 기타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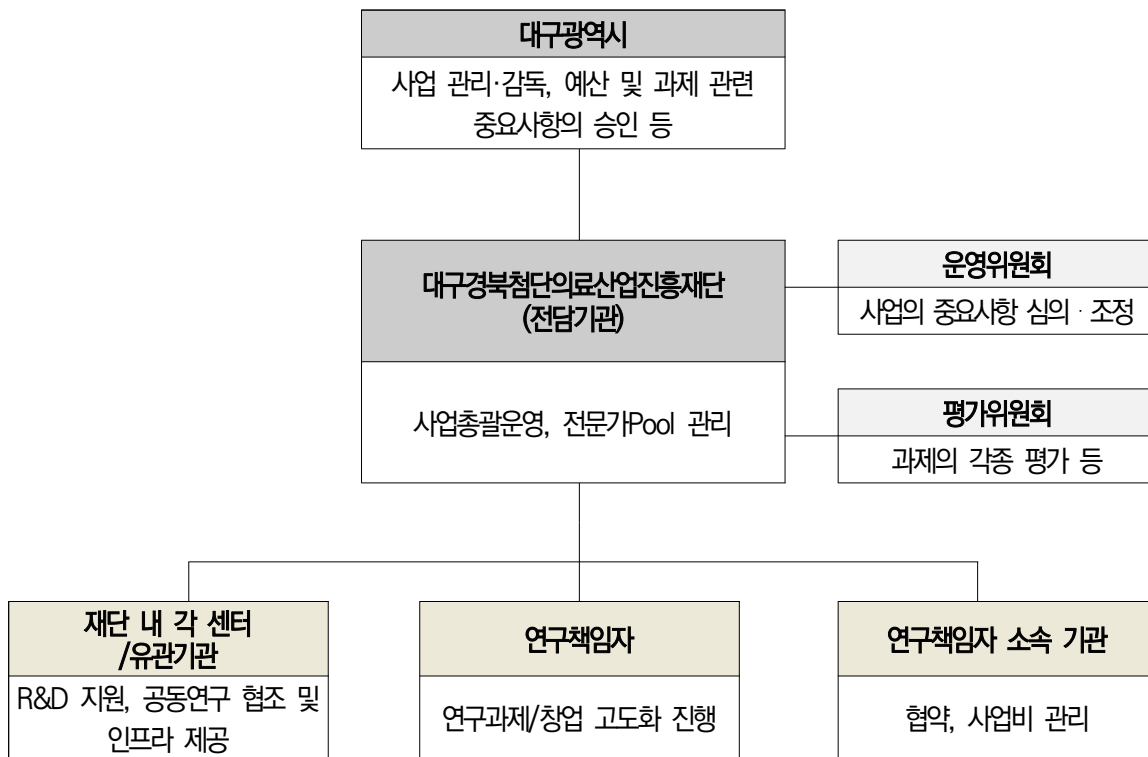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술서비스 선택 시 센터 협의완료서 제출

II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사업‘전담기관’ 역할 수행하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 중요사항 심의·조정 수행



III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의무조건

- 협약금액의 10%이상 기관 현금 부담 필수

※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의 사업비 조정 의견에 따라 사업비 규모 일부 조정할 수 있음

IV

지원제외 기준

□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이메일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케이메디허브 기술서비스 및 기술이전 등의 계약 불이행 등 미납금이 잔존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과제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평가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연장공고	케이메디허브	'26. 8. 4.(화)
↓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	기업 → 케이메디허브	'26. 8. 4.(화) ~ 8. 12.(수)
↓		
선정평가	케이메디허브(선정평가위원회)	'26. 8월
↓		
지원기업 확정	케이메디허브	'26. 8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케이메디허브 ↔ 기업	'26. 8월
↓		
협약체결	케이메디허브 ↔ 선정기업	'26. 9월
↓		
과제수행	선정기업	'26. 9월 ~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 등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서면 또는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고득점 과제 순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선정
 - ※ 단,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70점 이상)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사업 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VI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연 첩보단지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VII

공통사항

☐ 표기사항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해당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책임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재단이 지원한 연구임을 명기해야 함

☐ 신청방법

구분	내용
연장공고기간	2026.8.4.(화) ~ 8.12.(수) 18:00까지(9일간)
접수기간	2026.8.4.(화) ~ 8.12.(수) 18:00까지(9일간)
서식교부	케이메디허브(www.kmedihub.re.kr) 고객센터-과제공고 대구메디온(www.medion.re.kr) 지원정보-의료분야 지원사업
접수처	이메일 접수(yschoi@kmedihub.re.kr)
유의사항	접수일 이후 접수 불가 서류 제출 후 정상접수 유무 유선 확인 필수

IX

기타 유의사항

- ☐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첩보 단지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됨
- ☐ 접수는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 본 과제는 3책5공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他 국가과제로 수행한 과제로 중복 신청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연구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주관/세부/위탁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해당 신청기업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신청기업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과제 수행기간보다 길어야하며, 임면권자(대표 이사 등)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고, 사업신청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사업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구분하여 사업비 계상
 - 본 사업은 인건비 계상 불가 및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영리기관은 간접비 계상 불가(단,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 장비구입은 기관별 재단지원금의 10%의 범위 내에서만 계상 가능
- ☐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부담금이 입금 완료된 후 사업비 지급 예정

- ☐ 사업 신청자는 공고사항 및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수행기관(과제책임자)는 본 사업에서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

X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 신청 및 수행 문의	기업지원서비스팀 최유신 연구원	053-790-5056	yschoi@kmedihub.re.kr

- [붙임] 1. 사업계획서 서식 1부
 2. 기업현황카드 서식 1부
 3.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 서식 1부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 1부

- [별첨] 1. 2026년 K-MEDI hub 기술서비스 지원목록 1부
 2. 센터 협의완료서 1부